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와의 인사교류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3조)
- 나.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안 제12조)
- 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협의회가 마련한 인사교류안에 따라 교류를 실시(안 제13조)
- 라.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 금지(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22.~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2항 중 “19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행정실장”을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 및 시·도의회”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시·도”를 각각 “시·도 또는 시·도의회”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장·군

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으로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인사교류일부터 5일 이내”는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u>	제2조(적용 범위) --- <u>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회의 의장] --.</u>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동일)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37명</u>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u>지방행정실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u>지방자치분권실장</u> -----.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u>	2. <u>시·도 및 시·도의회</u> -----
④ (신 설)	④ <u>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u>

제6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도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시·도 또는 시·도의회-----
-----시·도 또는 시·도의회-----.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을-----.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① -----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반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 회 의장--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회 의장을-----.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